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6
----------	------

제출년월일 : 2014.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민의 정의(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상 경과한 자)를 변경함. (안 제2조제2호)

나. 운임 및 지원의 범위에 차량운임을 추가 신설함. (안 제2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상주하는”을 “30일 이상 경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객운임과”를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도서민”이라 함은 제1호의 인 천광역시민 중 도서에 주민등록 을 두고 <u>상주하는</u> 자를 말한다. 3. (생략) 4.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 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 고 시, 군·구에 통지한 일반 여 객<u>운임</u>과 여객터미널 이용료등 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u>30일 이상 경과</u> <u>한</u> -----. 3. (현행과 같음) 4. ----- ----- ----- <u>연</u> <u>객운임, 차량운임 및</u> -----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3조(지원범위) - 제3조의2(차량운임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라 함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주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3. “내항여객선”이라 함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4. “도서민 차량”이라 함은 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말한다. [신설 ‘13.12.30][개정 ‘14.3.12]

제3조(여객운임 지원) ①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은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지원금은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른다. [개정 ‘13.12.30][개정 ‘14.3.12]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개정 ‘13.12.30]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3. [삭제 ‘06.5.30]

② 도서에서 다른 도서로 진출입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경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14.3.12]

제3조의2(차량운임 지원) ①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서민이 도서민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에 있어 상한액 적용없이 정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신고된 차량운임의 20%로 한다. [신설 ‘13.12.30][개정 ‘14.3.12]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업용 국산차량이어야 한다. [신설 '13.12.30][개정 '14.3.12]

1.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도서민 차량 승선권은 1인 1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13.12.30]

④ 도서민 차량승선권 발권은 제5조에 따른 전산매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3.12.30]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도서민에 대한 차량운임 지원규정이 신설됨.

나. 제2조(정의),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및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서민 차량운임 보조 : 84,000대 × 7,500원 = 632백만원

* 2013년 도서민 차량 운송량 추정, 도서민 차량 운송비(소형 20%)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서민 차량 운임 보조		2,410	316	664	698	732
재 원 별	국비	1,205	158	332	349	366
	시비	1,205	158	332	349	366

* 2014년 운임보조비 : 7월 1일부터 지원으로 추계비 50%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50%), 시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도서정책과장 이 상 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도서민 차량 운임 보조	316	664	698	732	768	3,178
	소계	316	664	698	732	768	3,178
재원 조달		316	664	698	732	768	3,178
국 비		158	332	349	366	384	3,178
시비	소 계	158	332	349	366	384	3,178
	일반회계	158	332	349	366	384	3,17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